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2020.10.1. 시행)

1. 톤급별 · 거리대별 견인운임표

- 견인운임·요금(구난장비사용료, 하체작업비, 보관료)은 피견인차의 차량중량(공차상태)을 기준으로 5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차량중량(공차상태)과 관계없이 1구간(2.5톤 미만) 운임·요금을 적용한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 원)

톤급별 거리대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10 km 까지	72,200	100,300	128,000	154,400	174,500
15 km 까지	84,000	117,000	154,600	188,300	216,200
20 km 까지	95,600	133,800	171,300	209,600	242,500
25 km 까지	107,400	150,500	191,500	235,300	274,100
30 km 까지	119,100	167,200	211,600	261,000	305,700
35 km 까지	130,900	184,000	228,700	282,800	332,600
40 km 까지	142,700	200,700	250,000	310,000	366,000
45 km 까지	154,400	217,500	271,200	337,100	399,400
50 km 까지	166,200	234,200	287,600	357,900	425,100
55 km 까지	177,900	250,900	311,500	388,500	462,600
60 km 까지	189,700	267,700	324,400	405,000	482,900
65 km 까지	201,500	284,300	347,200	434,000	518,700
70 km 까지	213,200	301,000	366,600	458,800	549,200
75 km 까지	225,000	317,800	384,400	481,500	577,200
80 km 까지	236,700	334,500	407,200	510,600	613,000
85 km 까지	245,000	351,200	420,500	527,600	633,900
90 km 까지	256,600	368,000	443,300	556,700	669,700
95 km 까지	266,400	384,700	457,400	574,600	691,800
100 km 까지	277,800	401,500	480,500	604,200	728,200
100km 초과시 매10km 마다 가산	23,500	33,500	39,200	50,000	61,500

2. 적용기준

가. 이 운임·요금은 구난형특수자동차를 보유한 구난형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구난 또는 견인운송할 때의 운임 및 요금수수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 운임 및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나. 자가용 구난형특수자동차는 이 운임·요금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의거하여 모든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운송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다. 견인·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견인·구난장비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한다.

(1) 구난장비사용료 : 구난형특수자동차에 부착된 구난장비(크레인 등) 사용시 적용
(기본 4시간)

※ 위험물질(염산·황산·질산·페놀수지류) 운송차량에 대한 견인운송이 없는 단독 구난 작업시 상기한 위험물질에 장비가 노출되어 손상된 경우 구난장비사용료의 30% 까지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 원)

톤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구난장비사용료	163,200	243,600	374,400	528,000	804,800

– 구난장비사용료 기본 시간(4시간 기준) 초과시 매 1시간마다 가산 적용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 원)

톤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구난장비사용료	40,800	60,900	93,600	132,000	201,20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구난장비사용료는 기본 시간(4시간)만을 인정하고 초과 사용에 대한 요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원치사용료 : 구난장비 중 원치만 사용한 경우에는 구난장비사용료(크레인 사용)의 40%를 적용한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 원)

톤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원치사용료	65,300	97,400	149,800	211,200	321,900

※ 차량의 전도, 전복, 미안전지대 추락 및 도로이탈 등으로 인하여 원치를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단순히 차량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운송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차량의 위치이동시에 원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견인장비사용료(돌리) : 77,000원

라.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단수는 100원 단위로 하며, 10원단위에서 4사5입에 의하여 절상절하한다.

마. 운임은 실차거리(편도)에 의하여 경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단 거리에 준하여 계산한다. 단, 화주가 경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한 경로의 거리에 의한다.

바. 다음의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는 견인운임·요금(요금은 하체작업비, 안전조치비만 할증가능)의 30%(별도 할증을 규정시 해당 할증을 적용)를 각 항목별로 각각 가산하되 (4)항과 (5)항은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같은 항목에 있는 조항인 경우도 중복 가산을 하지 않는다.

(1)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으로 호우·대설·태풍·폭염경보가 발효된 경우

(2) 야간(20:00 ~ 익일 06:00),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3) 중·대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중·대형 특수자동차

※ 차량의 중·대형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 (4) 위험물(휘발유·경유·등유 등), 유해화학물질(황산·염산·질산 등), 고압가스(가연성가스·독성가스 등) 운반차량 : 100% 할증, 화약류 운반차량 : 200% 할증, 방사선 물질 운반차량 : 300% 할증
 - ※ 동 할증항목은 해당차량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화약류, 방사선 물질 등을 적재한 상태일 경우에만 적용하고 미적재 상태일 경우에는 할증적용을 하지 않는다.
- (5) 차량중량(공차상태)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의 30% 이상을 적재한 차량
 - ※ 동 할증항목은 송장 및 계량증명서 등으로 화물의 무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6) 고속도로 본선구간에서 작업한 경우 (10% 할증)

사. 다음 비용은 실비로 받는다.

- (1) 자동차 도선료(도선에 따르는 제경비 포함)
- (2) 유료도로 통행료
- (3) 차주의 요구에 의한 첨가 물품 비용

아. 계산순서

- (1) 차량을 견인하는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톤급별·거리대별 견인운임)의 계산
- (2) 운임의 단수처리
- (3) 제요금 및 실비의 계산(견인·구난장비사용료, 하체작업비, 안전조치비, 할증료 등)
 - ※ 특수한 작업조건 하에서 가산하는 할증료 계산시에는 견인·구난장비사용료는 포함하지 않고, 견인운임과 하체작업비, 안전조치비를 합산하여 할증을 계산한다.

자. 하체작업비

하체작업이란 사고 및 고장차량을 견인이 용이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하며, 하체작업비는 작업소요시간과 관계없이 아래의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 원)

톤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하체작업비	36,800	47,700	66,100	80,600	104,000

차. 안전조치비 : 15,000원

안전조치작업은 도로 등 고장·사고현장에서 실시하는 후방안전조치작업 및 잔존물 청소작업 등을 말하며, 안전조치비는 피견인차량의 중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000원을 적용한다.

단, 야간(20:00~익일 06:00)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방 안전 조치를 위한 불꽃신호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조치비와 별도로 15,00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불꽃신호기 사용 갯수와 관계없이 일괄 15,000원 적용

카. 회차비

차주의 견인(작업) 요청시 하체작업만하고 견인운송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체작업비에 톤급별·거리대별 견인운임표상의 해당 피견인차 10km까지 운임의 50%를 가산하여 하체작업비를 청구할 수 있다.

※ 보험사(육운 공제조합 포함) 처리건에 대해서는 회차비 적용 제외

타. 보관료

피견인차량을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보관한 경우 차량을 보관한 때 1일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단, 1회 보관료 총금액은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로부터 72시간 이내의 기간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단위 : 원)

톤급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이상 12톤 미만	12톤 이상
보관료	41,600	55,500	69,400	97,100	124,800

파. 기타

- (1) 본 운임 및 요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동 운임·요금표상의 운임·요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붙임 1] ‘차량 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운송사업 허가증과 해당 견인운송 및 작업 등의 시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해야 한다.
- (3) 본 운임·요금 및 부대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갈등 및 혼란이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이해관계자(화물운송업계, 손해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하. 신고운임·요금 적용시기

이 운임·요금은 2020. 10. 1.부터 적용한다.

3. 부대조항

(1) 화물을 적재한 화물자동차의 운임 적용의 특례

○ 화물 적재 화물자동차

- 차량중량(공차상태)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의 차량중량(공차 상태)에 화물의 무게를 더한 중량을 기준으로 구간별 견인운임 적용
- 차량중량(공차상태) 12톤 이상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의 30% 이상 적재 시 할증 적용(바. 할증 (5)항 적용)

※ 화물을 적재한 화물자동차의 견인운임 특례 적용은 화물송장 및 계량증명서 등으로 화물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화물의 무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견인·구난상태의 정의

구 분	피견인차 상태
견인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력이동이 불가능한 상태 ※ 파손된 채 도로 위에 놓인 상태(차량끼리 얽힌 상태 포함), 구난작업을 통해 도로 위로 원상복구된 상태 등
구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복(완전히 뒤집혀 넘어진 상태, 바퀴가 하늘 방향) ○ 전도(옆으로 넘어진 상태, 바퀴가 옆면 방향) ○ 추락(도로밖으로 추락한 상태, 바퀴가 4개 이상 도로이탈) ○ 위 3가지 상황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견인운송이 불가능하여 구난장비를 사용하여 구난작업을 하여야 하는 상태

(3) 견인·구난장비의 종류 및 견인·구난장비사용료 인정기준

구분	종류	인정기준
견인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4륜구동 차량 ② 전륜구동 차량(후륜 고장시에만 인정) ③ 후륜구동 차량(전륜 고장시에만 인정) ④ 전자브레이크 장착 차량(수동 해제 불가능 차량만 인정) <p>위 차량들이 자력이동이 불가하여(견인상태인 경우) 돌리를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p>
구난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인 (봄대 포함) ※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장착된 것을 말하며, 카고크레인 및 건설기계 크레인 등 구난형 특수자동차 이외에 장착된 크레인 등은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난상태에서 사용 시 인정 ○ 단순구난상태*는 견인운송이 없는 단독 구난작업시만 인정 * 바퀴가 2개 이상 도로(평지)에 남아 있는 경우(보도블럭 일부침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윈치 	

(4) 구난장비 사용시간 계산

- 구난장비사용료 청구의 기준이 되는 구난장비 사용시간은 렉카차량이 고장·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구난작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구난작업 종료시까지 소요된 시간을 계산한다.

(5) 구난장비사용료(크레인, 윈치) 중복 사용

- (단독 렉카차량의 구난장비 중복 사용) 단독 렉카차량의 구난작업시 크레인 및 윈치를 중복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를 각각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되, 구난장비사용료의 불필요한 중복 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1구간에 대해서는 크레인 및 윈치의 중복 사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복수 렉카차량을 이용한 구난장비 중복 사용) 피견인차량 1대당 작업상황에 따라 복수의 렉카차량을 이용한 구난장비사용을 인정하되, 구난장비사용료의 불필요한 중복 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작업상황 등에 한정하여 구난장비사용료의 중복 청구를 인정한다.

- 사례) ① 농로 및 수로 등 협소한 도로에서의 구난작업 시 대형 렉카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여 2대 이상의 중소형 렉카차량으로 구난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 ② 차량 추락(바퀴가 4개 이상 도로 이탈)으로 인한 고공 구난작업 시 렉카차량의 전복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2대 이상의 렉카차량으로 구난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 ③ 위 상황에 준하여 2대 이상의 렉카차량을 통한 구난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6) 구난장비사용료 1구간(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상향 청구

- 구난장비사용료는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으로 구간별 요금을 청구해야 하나, 차량 추락(바퀴가 4개 이상 도로 이탈)으로 인한 고공 구난작업 시 렉카차량의 전복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해당 구간별 구난 가능 렉카차량보다 더 큰 렉카차량이 구난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난장비사용료를 1구간 상향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단, 1구간(차량중량(공차상태) 2.5톤 미만)에 속하는 피견인차량은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사례) ① 차량 추락으로 인한 고공 구난작업 등 2구간에 속하는 피견인차량을 3구간 구난 가능 렉카차량으로 구난작업이 필요한 경우 피견인차량이 2구간에 속하더라도 구난장비사용료를 1구간 상향하여 3구간 요금을 청구
- ② 위와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2구간에 속하는 피견인차량을 4구간 구난 가능 렉카차량으로 구난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구난장비사용료를 1구간 상향하여 3구간 요금을 청구 → 2구간 이상 상향하여 구난장비사용료 청구 불가

※ 구난장비사용료 구간별 구난 가능 렉카차량 차량
(피견인차 차량중량(공차상태) 기준)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이상~4톤미만	4톤이상~8톤미만	8톤이상~12톤미만	12톤 이상
구난 가능 렉카차량	크레인 용량 3.5톤미만	크레인 용량 3.5톤이상~5톤미만	크레인 용량 5톤이상~9톤미만	크레인 용량 9톤이상~13톤미만	크레인 용량 13톤 이상

(7) 하체작업의 종류

- 하체작업이란 사고 및 고장차량을 견인이 용이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을 말하며, 하체작업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챔버작업, 구동 조인트 작업, 범퍼 해체 작업, 액슬샤우드 작업, 에어라인 연결 작업, 후미안전등 장착 작업 등이 있다.

(8) 부당 운임·요금 신고

- 화주(사고·고장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 등은 본 운임·요금표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부당 운임·요금을 수령한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붙임 1. 차량 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

